

비자연장안내

Visa Extension

- 비자연장 신청은 해당 비자 만기일 4개월 전부터 가능함. **본 기간 내에 미신청 시에는 벌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, 한국체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신청**
- 하이코리아 (www.hikorea.go.kr)을 통해 민원신청 (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진행)
-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직접방문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민원 혼잡도 개선을 위해 전자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체류기간연장을 하이코리아 (www.hikorea.go.kr)를 통하여 신청하면 민원수수료의 10%가 감면됩니다.

[제출서류]

[공통제출서류]

1. 통합신청서 (www.hikorea.go.kr 다운로드)
2. 여권
3. 외국인등록증
4. 체류지 입증서류 (예: 기숙사입소확인서, 기숙사비 영수증, 임대차계약서, 숙소제공확인서,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등)
5. 재정입증서류 (예: 10,000USD 이상의 본인 통장 잔고 확인서, 등록금납부확인서, 장학증서 등)
6. 재학증명서 (학생서비스센터 (학생회관 3층 305호 방문) 또는 인터넷 발급 [Click](#))
7. 성적증명서 (학생서비스센터 (학생회관 3층 305호 방문) 또는 인터넷 발급 [Click](#))
8. 수수료 6만원 (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면제)

[대학원 수료생 추가서류]

9. 수료증명서
10.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(www.hikorea.go.kr 다운로드)

[결핵 고위험 21개국 출신자 추가서류]

11. 결핵검진진단서 (대상자에 한함)
네팔, 동티모르, 러시아, 말레이시아, 몽골, 미얀마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스리랑카, 우즈베키스탄, 인도, 인도네시아, 중국, 캄보디아, 키르기스스탄, 태국, 파키스탄, 필리핀, 라오스

[추가학기 등록자 추가서류]

13. 사유서

※개인별로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(전화번호 1345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관련정보 참고: https://www.hikorea.go.kr/cvllappl/cvllapplInfoR.pt?CAT_SEQ=1808

연장 허용기간 (2015년 2월 지침 개정)

1. 학사과정: 8학기 재학 후 추가 학기 등록 최대 2년 이내
2. 석사과정: 수료 후 논문 준비자에 한해 최대 3년 이내
3. 박사과정: 수료 후 논문 준비자에 한해 최대 5년 이내

